



의안번호	제 2012 - 15 호
보 고 연 월 일	2012. 6. 18. (제4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55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가. 선거범죄 권고형량범위	1
나. 선거범죄 양형인자 관련	3
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6
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7
마.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9
바.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9
II. 제56차 전체회의	10
1. 일시·장소	10
2. 참석자	10
3. 주요 안건	10
4. 회의 요지	10
가. 선거범죄 양형인자 관련	10
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13
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16
III. 향후 일정	17

별첨	함석천,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
	최형표, “선거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심재철, 조석영,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IV)”
	최형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수정본)”
	최형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최형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함석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함석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함석천, “폭력범죄 양형기준 공청회·의견조회 검토”
	함석천,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심재철, 조석영,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증권·금융, 지식 재산권 범죄군 - ”
	심재철, 조석영,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폭력 범죄군 - ”
	최형표, “선거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최형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최형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최형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함석천, “폭력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5. 30. 소위원회 논의 요 구 사항 검토”

I. 제5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2. 5. 21.(월) 16:00 ~ 19:2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심재철, 안효철,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조석영,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선거범죄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추가 논의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논의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4. 회의 요지

가. 선거범죄 권고형량범위

(1) 통계분석 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여부

- 운영지원단의 선거범죄 통계분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권고형량범위가 기존에 법원에서 선고된 평균형량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된 것을 확인

-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현재의 양형기준안을 일단 유지하기로 함

(2)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관련

(가) 양형기준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원 - 300만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원 - 500만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200만원 - 700만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원 - 1,000만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에 있어서 감경영역의 벌금형 하한 조정 여부

- 통계분석 결과
 -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267건 중 벌금 90만 원 이하가 선고된 사건이 118건(44.2%)에 달함 ⇒ 대부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당, 수고비 등을 지급하거나 수수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사건임
- 논의 결과
 - 3유형인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에 있어서 감경영역의 벌금형 하한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특별감경인자 2개가 존재하여 특별조정을 거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권고되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므로 하한을 벌금 150만 원으로 낮추자는 의견

-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된 사건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등이 일당 등을 지급받은 사건이고, 후보자나 후보자측에게 돈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현행안을 유지하자는 견해
- 논의 결과 일단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데 대체로 의견이 합치

나. 선거범죄 양형인자 관련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 (가)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구체적 금품 액수를 기준으로 양형인자를 특정할 것인지 여부

의견	논거
구체적 금액 특정 없고, 추상적 표현을 유지 (다수 의견)	○ 금품의 액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므로 단순히 액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님 ○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설정하려고 하여도 객관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매우 어렵고, 자의적 기준에 따른 기계적·형식적 양형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 높음 ○ 기존 양형기준에서도 양형인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액을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가 전혀 없음 ⇒ 기존 양형기준과의 체계적 통일성 유지 필요 (예컨대, 뇌물범죄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횡령·배임, 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구체적 금품 액수로 특정 (소수 의견)	○ 금품액수를 특정하지 않으면 감경인자를 넓게 해석해 대부분 사건이 감경영역으로 될 가능성이 크므로 당선무효형(300만원)의 기준이 모호해짐 ○ 사회통념상 극히 경미한 경우는 10만원 미만의 금품, 30만원 미만의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나)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견	논거
현행 유지 (다수 의견)	○ 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던 사람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마지못해 돈을 준 경우와 유권자 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사로 매수행위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 ○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들을 보더라도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자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당선자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경우는 돈을 받은 사람보다는 준 사람이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음 ○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와 공모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악용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적 요구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훨씬 높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적극적 요구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원 등이 스스로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움 ○ 매수행위는 선거범죄에 있어서 부패범죄라 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뇌물범죄에 있어서도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하고 있음
정의 부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 (소수 의견)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적극적 <u>지속적이고 집요한</u>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로 수정하자는 의견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라고 규정할 경우 우연한 기회의 일시적 요구까지 확대 해석될 우려가 높음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상대방과 모의하여 마치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높음

(다)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

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논의 결과 인자 정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실제로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당락의 표차이가 매우 작았던 경우(또는 선거경합이 치열하였던 경우)

의견	논거
특별가중인자 반영을 부정 (다수 의견)	○ 선거결과 당락의 표차가 매우 작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가중하는 것은 행위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는 하나 여론 조사 결과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서 개표가 끝나기 전에는 선거경합이 치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당락의 표차이가 작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행위가 선거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 ○ 많은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경우를 더 가볍게 처벌한다는 것은 모순임 ○ 기존의 법원의 선고결과를 보더라도 당락의 표차이가 작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별가중을 할 정도의 형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개표결과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경우에는 선거법위반 사실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소수 의견)	○ “범행의 동기가 선거의 우열구분이 곤란한 박빙을 극복할 목적인 경우”로 수정해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사전 여론 조사를 통하여 선거 경합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면 범죄에 대한 욕구가 클 것이므로 일방예방적 차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성 있음 ○ 당락의 표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매수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야 함

(마) 신문·방송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의견	논거
특별가중인자 반영을 부정 (다수 의견)	○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데 비하여, 신문·방송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어서 단순히 대중을 상대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만을 들어서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와 신문·방송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행위의 법정형이 일치하는 것은 양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신문·방송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소수 의견)	○ 지역 신문들이 난립한 지방의 경우, 어느 신문사가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함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 매수 및 이해 유도 유형에 관한 논의와 동일함

(3)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가)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의 예시 중 SNS(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

-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의 예시 중 SNS의 경우에는 TV, 라디오 등과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친구 설정 등을 통해서 제한된 범위의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들은 다른 매체와는 달리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고,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정의가 맞지 않게 될 위험 존재
- 논의 결과 현재의 양형기준을 일응 유지하되, SNS의 경우도 전파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인자 정의를 보완하기로 함

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1)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좀 더 특정할지 여부

- 문언상으로도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고, 양형인자는 가급적 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함

(2)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

- 보행자나 대향차량의 탑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 호의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위불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법원의 양형에서도 호의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소 감경된 양형을 하는 사례가 많음(예컨대, 애인이나 가족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등)
-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합치

(3)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예시 중에서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부분을 유지할지 여부

-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은 다른 예시인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 “피해자측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어 예시에 명시하기 보다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포섭될 수 있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함
-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합치

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1) 실행권고사유에 부정거래를 추가할지 여부

의견	논거
추가 반대 (다수 의견)	○ 실행권고사유는 누가 보아도 실행을 권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데 이론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형위원회에서도 추가조작행위 중 일 정행위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실행권고사유로 추가한 것임 ○ 이에 반해서 부정거래는 포괄적인 사기금지 규정에 따라서 실무 상 당해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판단이 쉽 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판단이 어려운 사안도 적지 않 은데, 일률적으로 실행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한 결론에 이를 위 험성 높음
추가 의견 (소수 의견)	○ 부정거래는 시세조종과 같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로서 양자 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무상 어떤 행위 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유죄로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는 대개 시세조종과 같은 정 도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부정성이 있는 사안일 것이므로 시세 조종과 같이 실행권고사유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음

(2)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형량범위를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의 형량범위보다 상향할지 여부

의견	논거
현행안 유지 (다수 의견)	○ 기존에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통계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선고 되는 평균형량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고, 형량범위 자체를 달리 할 만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므로 알선수재에 관해서 권고형 량범위 자체를 올릴 필요는 없음 ○ 직무상 알선수재에 관하여 높은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중재의 경우보다는 많은 것이 사실이나,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받은 돈 의 액수 자체가 많아서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이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적용될 만한 사안일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에는 중한 유형에 해당하여 높은 형량이 권고될 것이므로 현행 안을 유지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음 ○ 법정형 자체를 보더라도 벌금형의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징역 형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차등을 둘 만한 근거가 부족함
형량범위 상향하자는 의견 (소수 의견)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경우는 실무상 조직 적으로 불법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 ○ 법정형 자체도 ‘임직원에 대한 중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후자가 더 높음

단위 : 명, %

세부죄명		징역형량(월)																			전체
		2	4	5	6	7	8	10	12	14	15	16	18	24	29	30	36	42	48	60	
특경법 (알선수재)	수	1	3	1	25	0	36	19	39	2	2	1	18	3	0	1	0	0	0	0	151
	비율	0.7	2.0	0.7	16.6	0.0	23.8	12.6	25.8	1.3	1.3	0.7	11.9	2.0	0.0	0.7	0.0	0.0	0.0	0.0	100
특경법 (증재등)	수	0	2	0	9	0	6	5	4	1	0	1	1	1	0	0	0	0	0	0	30
	비율	0.0	6.7	0.0	30.0	0.0	20.0	16.7	13.3	3.3	0.0	3.3	3.3	3.3	0.0	0.0	0.0	0.0	0.0	0.0	100

- 특경법(알선수재) : 징역 1년 이하가 82%(124건)
- 특경법(증재 등) : 징역 1년 이하가 86%(26건)
- 다만, 실무상 특경법(알선수재)의 경우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이 18건, 2년이 선고된 사건이 3건 등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한 전수 자체가 많음

마.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 주무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바.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 일응은 주무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 추가 검토 후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함

II. 제56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2. 6. 4.(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심재철, 이수정, 이주원, 조석영,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선거범죄 양형인자 추가 논의
- 증권·금융,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4. 회의 요지

가. 선거범죄 양형인자 관련

- (1)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의 양형인자 정의 부분 수정 여부
- (가) 기존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의 정의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적극적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소위원회 논의 결과

- 다수 의견
 - 현행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 소수의견이 제시한 “상대방의 적극적 금품 등 요구”를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집요한(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등 요구”로 수정하는 방안은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요구에 응한 경우를 제외시키게 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 소수 의견
 - 적극적 요구라고만 하면 우연한 기회의 일시적인 요구까지도 모두 이 인자를 적용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 존재
 - “상대방의 적극적 금품 등 요구”를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집요한(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등 요구”로 수정하자는 의견
- 논의 결과
 - 소수 의견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데는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

으나, 다만 소수의견이 걱정하는 바를 고려하여 좀 더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 검토를 의뢰하기로 함

(다) 전문위원 논의 결과

- 소수 의견이 걱정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 정의부분을 아래와 같이 약간 수정하기로 하는 데 의견 일치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당락의 표차이가 매우 작았던 경우(또는 선거경합이 치열하였던 경우)”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가) 소위원회 논의 결과

- “당락의 표차이가 매우 작았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행위책임 원칙에 반하므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 다만, 소수 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선거의 경합이 매우 치열하여 매수행위가 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범행 동기가 선거의 우열 구분이 현저히 곤란한 박빙

의 상태를 변경할 목적인 경우'와 같이 표현하여 다른 특별가중인자의 정의 부분의 예시에 추가하는 방법 등 다른 보완 방법이 있는지 전문위원단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 논의 결과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별가중인자나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 일치

-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용 불가
 - 어떠한 정도를 '선거의 우열 구분이 현저히 곤란한 박빙'으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매우 곤란하고, 사후에 재판과정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곤란함
 - 표차이라고 하는 것도 선거구의 크기나 선거인 수에 따라 그 의미가 상대적이므로 어떠한 정도의 차이를 박빙으로 볼 것인지도 불명확함
 - 표차이와 상관없이 매수행위를 하는 사람의 범행 동기는 대부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량에서 차이를 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선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표 결과가 나타나는데, 당해 매수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객관적인 방법을 찾기도 지극히 곤란함
- 다른 특별가중인자로 포섭하는 것도 부적당함
 - 성격상 다른 특별가중인자로 포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선거의 경합이 치열한 경우는 다른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성 낮음

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1)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형량범위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의 형량범위보다 상향할지 여부

(가) 소위원회 논의 결과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중 조직적인 불법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행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는 방안에 관하여 전문위원단에 추가 검토를 의뢰함

(나) 전문위원 논의 결과

-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불법 대출을 알선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다수의 소액 예금주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하는 데 의견 일치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집행유예 기준 중 실형권고사유에 "부정거래"를 포함할지 여부

(가) 소위원회 논의 결과

- 양형위원회에서 이미 이 쟁점에 관하여 의결이 된 이상 원래 양형기준안을 유지하여 시세조종행위만 실행권고사유에 포함하되, 다만 소수 의견에서 수정 제시한 “부정거래 유형도 실행권고사유에 포함시키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는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만 전문위원단에서 추가 검토를 의뢰함

(나) 전문위원 논의 결과

- ‘부정거래’는 ‘시세조종행위’와는 동일시 할 수 없는 다양한 국면 존재
 - 2009. 2. 4.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부정거래행위로 기소된 사건 수는 미미한 수준임
 - 그나마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 사건임
 - ☞ 대표적인 사건으로, ELW(Equity Linked Warrant) 거래와 관련하여 스캘퍼(scalper)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12개 증권사의 대표이사, 임원 등 48명이 기소되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됨
 - 또한, 부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특정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이 드물고, 단순히 제178조 제1, 2항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이 대다수임
 - 공소사실에 다액의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을 기재한 사건 중에서 상당수는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입증에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
 - ☞ 예컨대,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판단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표시, 누락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투자판단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 내용에 포함된 이득액 부분에 관해서

는 무죄가 선고되고, 단순히 제178조 제1, 2항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사례

- ‘부정거래’의 경우는 그 동안 실무례가 많지 않은데다가 행위유형도 매우 다양하여 모든 부정거래 유형을 주가조작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시세조종행위와 동일시하여 실행권고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 일치

다.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 (1) “계획적 범행”을 일반가중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변경할지 여부

(가) 기존 양형기준상 “계획적 범행”의 취급

구 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범죄군	- 살인(“계획적 살인 범행”)	- 성범죄 - 강도 - 공무집행방해

(나) 전문위원 논의 결과

- 살인범죄는 범행의 결과가 동일하므로 범행의 동기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특성이 있는데 비하여, 다른 범죄들에서는 모두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폭력범죄에서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 일치

- (2) “1. 일반적인 상해” 유형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범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포섭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상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1. 일반적인 상해’ 유형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데 의견 일치

III. 향후 계획

- 전문위원 제57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추후 개최 일자를 정하기로 함